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. 11. 29 선고 2021가단12202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충남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

담당변호사 김동길

피 고 1. A

2. B

변 론 종 결 2022. 11. 15.

판 결 선 고 2022. 11. 29.

주 문

1. 피고 A은 원고에게 75,421,633원과 그중 75,421,545원에 대하여 2021. 11. 30.부터 2021. 12. 31.까지 연 9%의, 그 다음 날부터 2022. 2. 3.까지는 연 7%의,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가. 피고들 사이에 2021. 3. 27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34,934,83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,
나. 피고 B는 원고에게 34,934,837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피고 A은 원고와 사이에, ① 2019. 1. 30. 보증금액을 1,800만 원으로, 보증기한을 2024. 1. 20.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, C은행으로부터 2,000만 원을 대출받고, ② 2020. 3. 11. 보증금액을 4,000만 원으로, 보증기한을 2022. 2. 24.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, 위 은행으로부터 4,000만 원을 대출받고, ③ 2020. 3. 11. 보증금액을 1,000만 원으로, 보증기한을 2025. 2. 24.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, 위 은행으로부터 1,000만 원을 대출받고, ④ 2021. 2. 9. 보증금액을 1,000만 원으로, 보증기한을 2023. 2. 9.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, 위 은행으로부터 1,000만 원을 대출받았다(이하 ‘이 사건 각 보증약정’이라 한다).

나. 원고와 피고 A은 이 사건 각 보증약정 당시에 피고 A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되, 원고가 금융기관에 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이 원고에게 그 변제금과 지연손해금, 채당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.

다. 피고 A의 원리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2021. 7. 20. 발생하였고, 원고는 2021. 11. 30. C은행에 75,786,607원을 변제하여 피고 A이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원리금은 합계 75,421,633원[= 대위변제금 75,786,607원(= 15,638,594원 + 40,102,947원 + 10,034,448원 + 10,010,618원) - 회수금 365,062원 + 확정손해금 88원]이다.

라. 한편, 피고 A은 2021. 3. 27.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한 매매계약(이하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피고 B에게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21. 4. 15. 접수 제184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마.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,000,000원, 채무자 피고

A, 근저당권자 D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’이라 한다)가 마쳐져 있었는데, 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21. 3. 30.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, 위 근저당권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담보채무는 19,310,163원이었다.

바.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21. 8. 20. 기준 가액은 54,245,000원이다.

사.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극재산으로 다음과 같이 합계 114,649,000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.

순번	채권자	금액(천원)
1	C은행	60,000
2	E	5,429
3	F조합 G	781
4	F조합 G H	35,590
5	I	849
6	J	12,000
합계		114,649

【인정근거】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, 8, 9, 10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A은 원고에게 75,421,633원과 그중 대위변제금 75,421,54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1. 11. 30.부터 원고가 구하는 2021. 12. 31.까지는 위 기간 약정 이율인 연 9%의,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2. 2. 3.까지는 위 기간 약정 이율인 연 7%의,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채권자취소권의 발생

1) 피보전채권의 존재

가)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,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,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,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6다23718 판결 등 참조).

나)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,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 채권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계약이 2019. 1. 30.경 체결되어 있었던 점, ② 피고 A은 C은행 뿐만 아니라 K단체, J, L, M, N, I 등 여러 금융기관과 카드회사에 대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점, ③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로부터 불과 3개월 20일여가 경과한 2021. 7. 20. 보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2021. 11. 30. 구상금채권이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2)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,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54,245,000원 상당 가액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이렇다 할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반면, 소극재산은 합계 114,649,00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. 이처럼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 A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,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
나아가 피고 A은 이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,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.

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.

3)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

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므로,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. 또한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

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.

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21. 8. 20. 기준 가액은 54,245,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역시 위와 같을 것으로 추단된다.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공동담보가액은 34,934,837원(= 시가 54,245,000원 - 피담보채무액 19,310,163원)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구상금 채권액 75,421,633원보다 적다. 사해행위에 따른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취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인 34,934,837원의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.

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34,934,83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34,934,837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윤재필

별지

1. 당진시 O 대 79㎡

2. 당진시 O

[도로명주소] 당진시 P

시멘트블록조시멘트기와지붕

단층주택 38.61㎡. 끝.

